## 한국보건개발연구원 (1976~1981)

# 보건의료 정책연구의 기본틀 확립

## 주요 기능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기능은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국민보건에 관한 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② 합리적인 의료제공체계의 설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③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의 실시 및 평가
④ 장 · 단기 보건의료의 수요조사 및 평가
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⑥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
⑦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⑧ 국가로부터 위촉된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러나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종합적인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이었으며, 이 시범사업이 1976년 4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실질적인 기능도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제6조 3, 5, 6, 7항에 규정된 시범사업 관련 평가, 시범사업 종사자 교육 등에 집중되었다.

한편,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 제20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된 보건정책협의회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① 종합보건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및 그 목표에 관한 사항
② 보건 및 의료제공체계의 설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종합보건의료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원의 연도별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연구원의 정관에 관한 사항
⑥ 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주요기능**

즉,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의 예산 · 결산, 사업계획, 정관, 주요 임원 임명 등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 · 감독과 함께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 평가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다.

또한 보건기획단은「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제18조에 따라 보건정책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1976년 4월 3일 보건정책협의회 의안 제3호「보건기획단운영규정」에 의하여 한국보건 개발연구원 내에 법적 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① 보건개발계획과 그 정책수단의 연구
② 연구원의 종합평가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③ 보건정책 자료의 수집
④ 기타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즉, 보건정책협의회의 심의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와「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된 기능으로 하였다.